제784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신설)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규정	1.비중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양식시설 입주기준(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상 양식시설 중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양식시설을 규정	1.비중요
3	격리재배검역요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격리재배 대상추가 등(장미속 등 격리재배대상식물 추가지정)(강화) 포도피어슨병 및 과수화싱병 기주식물인 장미속, 퍼플초크베리, 산당화, 풀명자, 서양산사나무,은행나무,Mytle, 피닉스야자, 피스타치오, 살람, Kamchatka bilberry, Shagbark hickory를 격리재배대상에 추가	1.비중요
4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국토교통부)	1.조합원 운영위원 입후보 자격(신설) ㅇ입후보 자격 및 절차(제4조 제1항) -(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총 출자좌수의 3% 이상 또는 대의원 총수의 3%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절차) 투표일 7일 전까지 선관위 지정장소에서 등록신청 필요 2.출자좌수별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기준(신설) ㅇ출자좌수 기준(제4조 제5항, 제6항) - (건공)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숟조합원) 중 출자좌수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누적기준 상위 20% 대규모출자자 중에서 2명 이상 선출 -(전공·기공) 정관 상 다수출자자로 구성된 대의원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점을 감안, 하위 20%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신설)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 2.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신설) 증권회사는 일반 청약자의 청약내역 및 암호화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 후 증권회사에 중복청약 여부를 통지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신설)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기준 및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강화)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음식점·급식소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도 선별포장 처리 의무 부과 2.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 발급 및 보관 의무화(신설) ㅇ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처리 의뢰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별지 제43호서식 신설)를 발급하고 2년간 보관(안 별표 12) ㅇ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이를 보관하고,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 시 사본을 제공(안 별표 13) 3.위생화 착용하고 외부 출입한 경우 처분 강화(강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기준 강화 4.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강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5.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세부기준 근거 마련(신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품목별로 검사하고,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름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신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결과를 분기별(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도록 함	1.비중요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 정부지원 배제(신설)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의 정부지원 배제기간 규정 1.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2.독립제작사 실태조사(신설) 상위법 위임에 따른 독립제작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함 1. 독립제작사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 독립제작사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독립제작사 신고제도 정비(신설) 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4.독립제작사 행정처분 기준 마련(신설) 독립제작사 영업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 마련	
9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신설) ○ 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 - (조직 등) 1개 이상 전담부서와 3명 이상 상근인력(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포함), 전산장비와 사무실 - (기관·단체 범위) 조직 등 요건을 충족하는, 1)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2)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	1.비중요
1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자료제출 요구 등(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를 함에 있어 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시 감독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해제 사유 발생(자산총액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 규정 2.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함 3.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체계 및 위험 관리실태평가(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함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8.비중요 9.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시하며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 4.자본적정성 기준,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본적정성 비율(100% 이상)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을 위해 산식에 포함되는 각 요소의 정의(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통합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위험가산자본, 통합필요자본 등) -인허가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해당 집단의 자본적정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하는지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고려 5.보고 및 공시(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유, 지배구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시 -보고, 공시가 허위 또는 불성실할 경우 감독당국은 재보고, 재공시 등 요구 6.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이행, 경영개선계획 미제출 불이행에 따른 조치(신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감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독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 미이행 등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제출명령, 수정 보완명령,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있음 7.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의 기준(신설)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 8.행정처분(신설) 1.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 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외국 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위반 등)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 면책 9.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신설) - 고객정보 제공 가능한 업무를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위한 업무로 정함 -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시 준수해야하는 통지의 내용(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통지 주기(연 1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회 이상), 통지 방법(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등을 정함 - 소속금융회사가 정해야 하는 고객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고객정보의 종류, 제공처,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내부방침,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등)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청)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신설) 감리방법위반, 방염시공능력평가 거짓서류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1.비중요
12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신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별표 1의2로 정하며, 해당 별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3년으로 정함	1.비중요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1회용품 규제대상 시설·업종 및 신규 품목 추가 (안 별표 2)(강화) -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현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음식점·주점업을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신규 추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억제 신규 추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신규 추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신규 추가	1.중요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기준 신설(강화)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포장무게비율 등 추가 2.포장재의 재질별 사용비율 설정(안 제9조의6)(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 유도,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 3.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제1항, 제2항)(강화)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했으나,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	2.비중요 3.중요